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2. 11 선고 2019나321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2. 11 선고 2019나32146 판결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9. 3 선고 2019가소1059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19. 12. 3.

판결선고 2020. 2. 11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9. 3. 선고 2019가소105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859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
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류경진, 판사 이하림, 판사 홍유정